

◇개정이유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당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의 최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과 함께 여성·장애인 추천비율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원회 지정권자에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를 포함함(제6조제1항제5호).

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함(제12조제1항).

다. 현행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기준을 지금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100분의 40, 직전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100분의 40, 여성·장애인 지역구 추천 후보자수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변경함(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함(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

대 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윤식
----------------	-----

● 대통령령 제2689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용역”을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2호”를 “법 제1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을 “제4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2조제1항제3호”를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7일”을 각각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7일”을 각각 “5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제30조제2항”을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6호 중 “심사”를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 · 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제9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 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 · 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9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10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복,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10호, 제21호 및 제9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개정이유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함.

나.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제25조제1항제4호하목)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 내용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자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및 제6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제44조제1항제9호 신설)

공간정보사업 입찰에 대해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정보화사업과 같이 지식기반사업의 일환으로 협상계약 체결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의 단축(제67조제1항 및 제4항)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의 대가지급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함.

<법 제처 제공>